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6. 16. 김원이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 6.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
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원이의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총 561만 5천명으로 이중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 내외임. 여성 자영업자의 76.5%에 달하는 132만 7천명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에 해당함.

여성 1인 자영업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안전상 우려가 있음.

실제로 왁싱숍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가해자가 여성 사업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1조의2 신설).

개정안에 따라 여성 1인 소상공인 현황 조사 및 여성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 등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여성 1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 제11조의2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 또는 물품 지급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김원이의원, 송재봉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 폐기).